

『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이 부동산 시장현실에 맞지 않고, 타 기관 지원 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주택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·조항 변경(안 제2조, 제6조, 제10조)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향조정, 지원금에 대한 연이자율 하향조정,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변경(안 제16조, 제17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, 용어 등 변경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율 및 보증금 비율을 낮추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저소득층 전세금융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